

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

규정 · 소관 국제교육원 · 현행 규정

개정 2024. 9. 30. · 시행 2024. 10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7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7:49:36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(이하 센터)라 칭한다.

제2조(위치)

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.

제3조(목적)

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.

1. 국제하계대학 운영<개정 2020-06-08>
2.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<개정 2020-06-08>
3.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
4. <삭제 2020-06-08>
5.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5조(조직)

본 센터에는 센터장, 사무직원, 상담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1.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, 통할한다.
2.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.
3.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.
4.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: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

제6조(운영위원회)

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)를 둔다.

1.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(위원장), 한국어교육센터장(서기), 국제교육원장, 국제교육팀장, 담당자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-09-30>
2.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
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 강사 등 센터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
3.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8조(의결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단기하계대학

제9조(지원 자격)

지원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.

제10조(지원절차 및 등록금)

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,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학기당 취득학점)

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20-06-08>

제12조(학사일정 및 수업)

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20-06-08>

제13조(환불 및 등록취소)

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.

제14조(기타)

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.

제15조(출입국 보고)

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.<개정 2020-06-08>

제16조(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4장 재 정

제17조(재원)

본 센터의 재정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8조(회계 연도)

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